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11. 11 선고 2021가합7560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행

담당변호사 김세진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백승 담당변호사 이강혁

변호사 김태하, 김준기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구

변 론 종 결 2022. 10. 14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“목록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. 6. 24. 체결된 양도계약을 439,860,6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39,860,61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5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9. 11. 8. C과 D을 상대로 '원고가 2005. 6. 7. 위 사람들에게 200,000,000원 대여하였음'을 이유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18443)은 2009. 11. 26. 'C, D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, 위 명령은 2010. 1. 8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는 2019. 11. 26. C과 D을 상대로 위 가.항 기재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, 제1심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6046)은 2020. 4. 10.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(원고가 구한 독촉절차비용에 대하여는 각하판결)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20. 6. 4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다. 한편, C은 2017년경 E을 상대로 약정금 660,000,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제1심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9734)은 2018. 9. 13.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.

라. C은 2018년경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, 항소심법원(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334)은 2019. 1. 15. 'E은 C에게 6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'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E이 2019년경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(대법원 2019다214521)은 2019. 5. 30.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마. C은 상고 2019. 6. 25. 피고와 사이에, C이 피고에게 'C의 E에 대한 위 라.항 기재 항소심판결(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334)에서 인정된 약정금 채권'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바. E은 2019. 6. 28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57,401,847원을 변제공탁(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금제3432호, 이하 ‘이 사건 공탁’이라 한다)하였고, 피고는 2019. 7. 8. 공탁금 중 439,860,613원을 출금받았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,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항변의 요지

원고는 2019. 11. 14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 사건의 기록 전체에 대하여 열람·복사하였는데, 공탁 사건 기록에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바,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.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,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1)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, ‘취소원인을 안 날’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,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(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).

2) 돌이켜 보건대,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2019. 11. 14. 이 사건 공탁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

같은 채권양도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인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)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위 1.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200,000,000원의 대여금채권 내지 판결금채권이 인정되므로,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은 인정된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

1)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갑 제5,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C의 채권자인 F, G로부터 C의 E에 대한 약정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(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54652, 2019타채4255)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.

2)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원고는 C의 적극재산, 소극재산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 등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았다).

3)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3년 12월경 2,500,000,000원, 2014. 2. 26. 300,000,000원, 2015. 10. 15. 300,000,000원, 2016. 8. 9. 700,000,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

4)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한홍, 판사 정재우, 판사 노재승